

월간 자본시장 제도동향

2020년 12월호

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규정

- 가. 금융투자업규정
- 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 한국거래소 규정

-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 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3. 금융투자협회 규정

-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 라. 신용거래약관

1.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차감 관련 특례 배제)

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표현방식 정비 등)

1.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규정*

가. 금융투자업규정 (2020/11/2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최근 증권사의 부동산 익스포저 증가에 대응하여 증권사 자금이 과도하게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잠재적 리스크도 완화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부동산 채무보증비율 정의(제3-6조 제19의2호)

- 부동산 채무보증비율이란, 자기자본에 대한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금액의 비율로 정의
 -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금액은 국내 주거시설(단독주택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주상복합 등)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보증금액의 100%
 -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 이외의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의 경우 채무보증금액의 50%를 각각 합산한 금액으로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Net Capital Ratio) 차감 관련 특례 배제(제3-14조 제1항 제4호 사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용순자본산정시 차감항목의 예외로 인정받아 온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중 국내 주거시설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제외하도록 함

□ 부동산 유형 등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값 별도산정 근거 마련(제3-22조 제6항)

- 부동산 관련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거래상대방별 위험값 등은 부동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금감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위원회 규정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 1종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채무보증한도 설정(제3-24조의5)

- 1종 금융투자업자는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 다만, 2020년말까지는 100분의 120 이하로, 2021년 6월말까지는 100분의 110 이하로 유지하도록 경과조치 마련
- 부동산 채무보증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이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비율이 100분의 100 이하에 이를 때까지 신규 부동산 채무보증(사회기반시설 관련 채무보증 제외)을 취급하여서는 안 됨

나.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20/11/4 개정 · 시행)

1) 개정 이유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0. 10. 13)에 따른 하위 규정에 대한 정비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외부감사의 대상(제2조)

- 시행령상 외부감사 대상 기준 관련 표현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하위규정도 동일한 표현방식으로 정비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제9조)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상장사 등의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기 전까지 감사인 준수사항 확인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감사인 지정 대상 판단기준(제12조)

- 시행령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에 따라 관련 하위규정도 삭제

□ 조치등의 기준(제27조)

-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면제 근거로 위법행위에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2. 한국거래소 규정*

-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매매체결주기 연장)
-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호가 집적도 제고)
- 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불성실공시 병합처리기준 개선 등)

2.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11/26 개정 · 2020/12/7 시행)

1) 개정 이유

-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매매체결주기 연장을 통해 매매체결률을 높이고, 주식시장 매매중단(CB, Circuit Breakers)제도 발동요건 기산 시점을 명시하여 명료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저유동성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제41조의2 제4항 제2의4호, 제56조의3 제5항)
 -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 종목의 단일가매매 체결주기를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하고 변동성완화장치(VI)적용 배제
- 주식시장 등의 매매거래중단 등(제39조)
 - 시가지수 발표시간을 반영하여 CB발동 요건 기산시점(09:01부터) 명시(제39조)
- 기타 조문정비(제14조, 제36조, 제54조, 제119조 및 제129조, 별표2의2)
 -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에 대해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최우선지정가호가를 제한
 - 회원 통보대상 종목에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 추가
 - 시장조성대상종목의 선정시기 및 적용기간 변경근거 마련 및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 제외 요건 명확화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2020/11/26 개정 · 2020/12/7 시행)

1) 개정 이유

-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호가 집적도 제고와 가격발견기능을 개선하고, CB 발동요건 기산 시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저유동성종목의 매매계약체결(제28조의7)
 -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매매체결주기를 10분에서 30분으로 변경
- 시장의 일시중단 등(제31조 제4항 신설)
 - 시가지수 발표시간을 반영하여 CB 발동요건 기산 시점(장 개시 후 1분이 경과한 시점)을 명시
- 기타 조문정비(제8조, 제8조의5, 제28조, 제28조의4, 제28조의5, 제28조의7, 제28조의8, 제30조, 별표 5)
 -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에 대한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 및 최우선지정가호가 제출 제한
 -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내역 등에 대한 회원 통보 방법 명문화
 - 이상급등 단일가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대상 종류주식종목 및 매매거래정지종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회원 통보 의무 명시
 -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에 대해 변동성 완화장치 적용 배제
 -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시 시장조성대상종목의 선정 · 발표시기 및 적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선정 배제 요건 중 유동성공급계약의 시행 시점 명확화

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2020/11/18 개정 · 2020/12/1 시행)¹⁾

1) 개정 이유

- 불성실공시 관련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

1) 제12조제3항제3호 및 별표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하는 법인부터 적용

2) 주요 내용

□ 납입기일의 과도한 연기시 불성실공시 적용(제11조)

- 유상증자 및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결정 공시 후, 정정공시를 통해 최초 공시시점의 납입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납입 연기시 불성실공시(공시변복) 적용
 - 코스닥시장의 경우 6개월 이상 납입 연기시 불성실공시에 해당

□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생략 요건 개선(제12조 제3항 제3호)

- 위원회 심의 생략 요건 중 (기존) '최근 1년간 공시의무 위반사실이 없을 것' → (개정)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별점 (해당 부과별점 포함)이 15점 미만일 것'으로 변경
 - 누계별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므로 심의 필요

□ 공시의무교육 대상에 협회 개설과정 명시(제16조 제3항)

-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의 대상에 코넥스협회가 개설하는 과정을 명시하고, 외부기관이 개설하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과정을 삭제
 - 코넥스협회가 공시의무교육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명시

□ 불성실공시 병합처리기준 개선(별표 1 제4호)

- 병합처리기준에 별점의 적용기준(기준별점, 가중·감경사유 적용, 병합된 위반사실 1건당 1점씩 별점 추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 부과별점의 적용기준을 규정하여 다수 위반사실 중 별점이 가장 높은 별점(가중 및 감경사유 반영 후)을 기준별점으로 하고, 병합된 위반사실 1건당 1점씩을 추가한 별점을 최종 부과
 - 병합처리에 따른 추가 별점은 기준별점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
 - 최종 부과별점의 최대별점을 14점으로 제한(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과 다르게 부과별점에 대한 제재금 대체 부과 등이 없음을 고려)

□ 기타 조문정리(제11조)

- 규정 제13조에 '세칙에서 정하는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규정 세칙 제11조에서 '공시하는' 등의 문구 삭제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

3. 금융투자협회 규정*

-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일반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식 배정수량 제고 및 배정방법 개선등)
-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증권사별 기준금리 수준 및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 산정방식 공시 등)
- 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대신 개인신용평점 활용 등)
- 라. 신용거래약관 (금융투자업자가 신용공여시 투자자에 대한 신용이자율 변경 통지방법 개선)

3. 금융투자협회 규정*

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2020/11/30 개정 · 2020/12/1 시행)¹⁾

1) 개정 이유

- 금융위의 '기업공개(IPO)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기회 확대방안' (2020. 11. 19) 발표에 따라 일반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식 배정 수량 및 방법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일반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식 배정수량 제고

-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제9조 제1항 제6호)
 - (기존) 인수업무규정에서는 우리사주조합에 IPO공모주식의 20%(유가증권시장 20%, 코스닥시장 20% 이내)를 배정토록 하되, 청약수량이 이에 미달하는 경우 타 청약자 배정을 허용
 - 현재 대표주관회사는 우리사주조합의 미청약 잔여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배정하고 있음

[인수업무규정상 청약자 유형별 IPO 공모주 배정비율]

IPO 시장	우리사주조합	일반청약자	기관투자자		
			하이일드	코스닥벤처	그 외
유가증권	20%	20% 이상	10% 이상	-	잔여물량
코스닥	20% 이내	20% 이상	10% 이상	30% 이상	잔여물량

*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

1) 제9조 제1항 제6호, 제9조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부터 적용.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2항 제3호, 제9조 제2항 제6호 가목 및 제9조 제6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최초로 제출한 기업공개 또는 공모증자부터 적용

- (개정) 대표주관회사는 공모주의 5% 이내에서 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되,
 - 공모주의 20%에서 우리사주조합 청약수량을 차감하여 산정
- 우리사주조합원의 구체적인 미청약 사유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배정여부를 협의하여 결정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하이일드) 배정물량 이전(제9조 제1항 제3호)

- (기존) 인수업무규정에서는 IPO 공모주식을 일반청약자에게 20% 이상, 하이일드에 10% 이상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었음
- (개정) 2020년말 일몰 예정인 하이일드에 대한 공모주 배정을 2023년까지 연장하되, 배정수량을 축소(공모주의 10% 이상 → 5% 이상)하고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에 추가
 -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분부터 일반청약자에게 공모주의 25% 이상을 배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하이일드)〉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함
-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최초 설정일·설립일로부터 수요예측 참여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참여일 직전 영업일의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함

나) 일반청약자에 대한 IPO 공모주식 배정방법 개선(제9조 제11항~제13항)

- (기존) 인수업무규정에서는 일반청약자에 대한 공모주 배정 수량은 규정하고 있으나, 배정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현재 인수회사가 자체적으로 배정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약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비례방식 배정)하므로 고액청약자 일수록 배정 수량도 많은 상황
- (개정) 인수업무규정으로 일반청약자 배정과 관련하여 ‘균등방식’ 배정 및 투자자 보호절차 등을 규정화
 - 균등방식 배정
 - (원칙) 일반청약자 배정물량(우리사주조합 미청약 잔여주식 배정분 포함)의 50% 이상을 ‘균등방식’으로 배정하고, 그 외는 ‘비례방식’(청약 주식수에 비례)으로 배정
 - (물량조정) 균등방식 배정과 비례방식 배정 중 어느 한쪽은 청약이 미달이고 다른 쪽은 초과 청약인 경우 미달 방식의 잔여물량을 초과 청약에 배정

〈균등방식 배정 개념 및 예시〉

- (개념)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방법
- (일괄청약방식) 청약자는 현행대로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인수회사가 균등배정 물량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 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방식
 - * 균등배정 물량을 ① 청약자 수로 나누어 전 청약자에게 몫을 동일하게 배정하고, 나머지를 추첨으로 배정하거나 ② 청약자 중 추첨하여 동일 주식수를 배정하고 추가 추첨하여 나머지를 배정
- (분리청약방식)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을 구분하여 청약을 받고, 균등배정 청약자에게 추첨 등으로 동일한 주식수*를 배정하고 비례배정 청약자에게 비례배정하는 방식
 - * 인수회사가 정한 단일 청약단위로 청약을 받아 동 수량을 배정
- (다중청약방식) 분리청약방식 중에서 청약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한 복수의 청약단위로 균 등배정의 청약을 받는 방식

— 투자자 보호절차

- 인수회사는 준법감시인 사전 승인으로 일반청약의 배정물량 및 배정방식 결정
- 청약 관련 광고시 투자위험 등 안내 포함(약관광고심사팀에서 투자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 복수 인수회사간 동일한 균등방식을 사용

다) 하이일드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 축소·연장

- (기준) 2020년 12월 31일 까지 IPO 또는 공모증자를 위한 공모주를 하이일드에 10% 이상을 배정하되,
 - 코스닥 IPO 또는 공모증자의 경우 코넥스 하이일드*에 공모주의 5% 이상을 우선 배정하여야 함
 -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분기 평균)이 2% 이상인 하이일드
- (개정) 2023년 12월 31일 까지 IPO 또는 공모증자를 위한 공모주를 하이일드(코넥스 하이일드 포함)에 5% 이상을 배정
 - 코넥스 하이일드 우선 배정은 폐지

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20/11/20 개정 · 2020/11/23 시행)

1) 개정 이유

- 증권사별 기준금리 수준 및 사전에 정한 기준금리 산정방식을 매월 공시하도록 영업규정 시행세칙상 제출기한 및 공시서식 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기존) 기존 신용공여 이자율 공시방법은 조달금리가 공시되더라도 증권사별 조달금리 산정방식이 상이하여 비교가능성이 낮음
 - 본회의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에서 ‘대출 기준금리의 산정방식 및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된 대출금리 현황’을 협회에 매월 보고 · 공시하도록 개정(2020. 10. 21. 개정, 2020. 11. 23. 시행)
 - 증권담보용자의 모범규준 적용범위 확대는 2021시행예정으로 시행일에 맞춰 증권담보용자 공시서식 개정 예정
- (개정) 신용공여 이자율 현황의 제출기한 및 공시자료 제출서식 개정(제56조 제3항 제9호, 별지 제52호)
 - (제출기한) ‘매월 말일까지’ 추가
 - 기존 ‘이자율 변경 시 지체 없이’는 유지
 - (공시서식) <별지 제52호> ‘신용공여 이자율 현황’ 중 「1. 신용거래용자」 ‘(4)조달금리 및 가산금리’를 ‘(4)기준금리 및 가산금리’로 수정하고 「이자율 현황 첨부」 추가

다.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2020/11/18 개정 · 2021/1/1 시행)

1) 개정 이유

- 신용정보법 등의 개정으로 2021. 1. 1. 부터 개인 신용등급 제도가 개인신용평점 제도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모범규준에 반영하기 위함
 - 정부는 신용등급제(1~10등급) 적용에 따른 문턱효과 해소를 위해 신용등급 대신 개인신용평점(1~1,000점) 활용을 추진
 - 예) 개인신용평점이 신용등급 구간내 상위에 있는 경우(예: 7등급 상위)는 상위 등급(예: 6등급 하위)과 신용도가 유사함에도 대출심사시 불이익
 -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방안(2018년 1월)에서 개인신용등급의 점수제 전환 발표

2) 주요 내용

-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대신 개인신용평점을 활용하여 신용거래용자 관련 리스크관리에 활용(제3-9조)
 - (기존) 신용정보회사(Credit Bureau, 이하 'CB사') 신용등급을 활용하여 신용거래용자 가능 여부 결정 및 한도 차등
 - (개정) CB사의 개인신용평점을 활용하여 신용거래용자 가능 여부 결정 및 한도 차등
 - 향후 CB사에 따라 기존 신용등급 별 개인신용평점 분포가 달라지므로 <별표 7>에 의한 CB사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른 신용거래용자 한도설정 사례를 제공하지 아니함

라. 신용거래약관 (2020/11/13 개정 · 2020/11/23 시행)

1) 개정 이유

- 금융투자업자가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 신용이자율 변경 시 투자자에 대한 통지방법에 관한 개선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회사가 신용거래용자이자 및 연체이자의 이자율 변경 시 고객에 대한 통지방법을 구체화한 조문 신설(제11조 제3항, 제4항)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용어정비(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4조)

연구원 신경희(02-3771-0854, skh0828@kcmi.re.kr)